

의안번호	제182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6월 일 (제 301 회)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6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	-----

제출연월일 : 2011년 6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이관·조정
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로 농촌주택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고
- 농어촌주택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용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자금 및 보조조건(안 제5조제3항)
 - 이율을 정하는 부처장관 및 상환방법의 변경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세증상환”을 “분할상환”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용자 및 보조조건)</p> <p>① ~ ② (생략)</p> <p>③ 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이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p> <p>2.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u>채증</u> 상환</p>	<p>제5조 (용자 및 보조조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이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리</p> <p>2.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u>분할</u> 상환</p>

관련법령 발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 10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자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 201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2. 지원형태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조건 : 금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